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3
------------	-----

발의연월일 : 2025년 9월 25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육영, 박영섭,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 1. 제안이유

성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신체·정신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주 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나. 금주구역 지정·변경 등의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 다. 교육 및 홍보, 연구 단체 지원 등의 규정(안 제7조~안 제8조)
- 라.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규정(안 제11조)
- 마. 과태료 규정(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의4, 제34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협의사항 : 건강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5. 9. 30. ~ 2025. 10. 4.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를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로, “주민”을 “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을 “(금주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법 제8조의4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으로,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음주청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로, “설치”를 “설치 또는 부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음주정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 구역

4. 버스 정류소 · 택시 승차대

제3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 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4항 및 제3

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절주 또는 금주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 폐해 예방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발견하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절주운동 등)"을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증진 사업"을 "건강증진사업"으로, "이를"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모든 구민"을 "구민"으로, "추진과정에"를 "추진과정에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 략)</li> <li>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li> </ol> <p><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 구민-----.</p>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li> </ol>
<p>4. (생 략)</p> <p>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p>	<p>4.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p>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신 설>

3. 버스 정류소 · 택시 정류장

(신설 2015.11.5, 개정 2021.3.1  
8.)

4. (생 략)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법 제8조의4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 각 호의 어느 하나-----  
----- 금주구역-----  
-----.

1. (현행과 같음)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버스 정류소 · 택시 승차대  
<삭 제>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설치 또는 부착---.

③ -----  
-- 금주구역-----  
-----  
-----  
-----.

<신 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  
----- 제2조제5호-----  
-----  
-----  
-----.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 (생 략)

제6조(절주운동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 홍보관을 설치 · 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범인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제8조(구민의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건강증진사업-----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

제8조(지원 대상) (현행과 같음)

제9조(구민의 참여) 구민-----  
----- 추진과  
정에서 -----  
-----  
-----  
-----.

제10조(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절주 또는 금주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 폐해 예방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

### <신 설>

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발견하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 설>

제1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 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삭 제>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절주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절주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